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다3587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다35874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5. 22 선고 2014나48122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 10. 7 선고 2014가소5535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A

피고, 피상고인B

판결 선고 2015. 8. 27.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5. 22. 선고 2014나4812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가 정하는 소액사건에서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의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그런데 소액사건임이 분명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상고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사유는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조희대

주심대법관이상훈

대법관김창석

대법관박상옥